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 388

발의 연월일 : 2008년 9월 25일

발 의 자:김학원의원외 7 인

1. 주 문

○ 대전광역시의회 내에"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"를 구성한다.

○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대전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, 대전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등에 나타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,
- 의장선거 등 의회 원 구성, 공기업 소관 등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소관 문제, 의회 정례회 시기 조정 등 그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의회 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 하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
-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

찬 성 의 원 명 단

찬 성 의 원	서 명	비고
2) 3/50	(H)	
可以到		
学 千岁	bynno	
306元	0406 CZ	
过增明	桓	
3 24	ton	
0) 73 51	67h	
五日初	met	

지 방 자 치 법

제66조 (의안의 발의)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-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 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의회는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